

[검토의견서](의원발의)

검토의견서

【행정지원과】

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안

1. 제안이유

제237회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 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안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구분)제3항제4호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폐지

3. 검토의견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구분)로 관리되던 고용직 공무원의 규정의 삭제로 직종개편을 통하여 시설관리직렬로 관리되고, 상위법령의 관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조례를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우리구로 이송되어 온 안과 같이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⑨ (생략)